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1.

발 의 자 : 김남근 · 김우영 · 박정현
민병덕 · 박홍배 · 염태영
김 윤 · 박 정 · 임오경
오기형 · 김태선 · 박민규
남인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(제44조),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.

그런데,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, 국가 등 공공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(26. 10. 시행 예정) 있음.

이에,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, 보험(또는, 공제)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(안 제44조제5항, 제6항 및 제7항 신설).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배상보험(또는, 공제) 가입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
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국가

2. 지방자치단체
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· 종류 ·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4조(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배상보험(또는, 공제) 가입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</u> <u>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.</u> <u>1. 국가</u> <u>2. 지방자치단체</u> <u>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</u> <u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</u> <u>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· 종류 ·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